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
의안번호	2503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4. 15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'우대하고'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및 제2조)
- 나.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유공납세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(2024. 2. 29. ~ 2024. 3. 20.)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 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세”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.
2. “유공납세자 대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 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,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
 - 나.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,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

제3조(유공납세자 선정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」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대 및 지원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
2.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3.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4.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
5.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제5조(선정 취소)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 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우대를 즉시 중단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,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

2.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
제6조(사후 관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, 체납 유무, 징수유예 유무,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제정안은 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
연 락 처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(생략)

3. (생략)

4. (생략)

5. (생략)

6. (생략)

7. (생략)